

NEXUS BRIEF · NB-2026-087 · 가계부채·대출

최근 7일 대부액 합산은 아직 입법예고안이다

현행 면제액은 100만·300만원이고, 다른 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할 자료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공고 제2026-419호,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대조해 예고안과 시행 중인 규칙을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9.02	연번	2026_87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2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안을 변제능력 심사의 전면 강화가 아니라 소액 면제구간의 계산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본다. 원안대로 공포돼도 합산 기간은 최근 7일이고 상대는 법률상 등록 대부업자다. 다른 업자의 대부액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산식과 집행 사이에 공백이 남는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정부는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면제액을 계산할 때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에게 받은 금액도 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현행 조문에는 이 항목이 없으며 최종 산식과 시행일은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고문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적 상태	입법예고 종료	2026년 9월 2일 현재 공포 확인 전
예고 공고	금융위원회 제2026-419호	의견접수 7.6~8.18
현행 면제액	29세 이하·70세 이상 100만원	그 외 300만원
현행 산정	기존 대부잔액+새 계약액	같은 대부업자 기준
예고안 추가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액	안 제4조의3 제2항
등록 대부업자	8,203곳	2025년 6월말 조사
이용자·잔액	71.7만명·12.5조원	같은 조사 기준

현행 시행령 제4조의3은 같은 대부업자가 이미 빌려준 잔액과 새로 계약하려는 금액을 더합니다. 합계가 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그 밖의 사람은 300만원인 경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고안은 여기에 계약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여러 업체가 한 사람에게 소액 계약을 나누어 제공해 각 계약을 면제구간 안에 두는 방식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공고는 고정사업장을 벽 등으로 구획하고 별도 출입문과 일반 이용자의 방문 가능성을 갖추게 하는 안, 각 경찰관서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러나 9월 2일 현재 국가법

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은 2026년 5월 6일 시행본이며 최근 7일 합산 문언은 아직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부업법 제7조는 계약 전에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받도록 하고, 소액 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심사 의무와 면제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뉜 구조입니다.

현행 산정식은 한 대부업자 안의 기존 잔액과 새 계약액만 봅니다. 서로 다른 업체가 같은 사람에게 며칠 사이 대출을 나누어 내주면 각 업체의 계산에는 자기 회사 금액만 들어갑니다. 예고안은 업체 사이 경계를 최근 7일 범위에서 연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산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그 값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정보조회, 거래상대방의 진술이나 별도 증명 중 무엇을 의무적인 확인자료로 쓸지 예고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자료가 다르면 같은 차입자도 업체마다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대부업자'를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합니다. 연구소는 이 정의와 예고안의 '다른 대부업자' 문언을 함께 읽어, 미등록 사금융에서 진 부담은 이번 합산식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등록 대부업자에게서 소액 대부를 받으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면제를 이용하는 개인입니다. 2025년 6월말 등록 대부업자 조사에서 이용자는 71.7만명, 대출잔액은 12.5조원, 1인당 대출잔액은 1,737만원이었습니다.

일반 면제액 300만원은 조사상 1인당 평균 잔액 1,737만원의 17.3%입니다. 이 비교는 소액 계약 한 건의 기준과 전체 등록 대부업권의 평균 잔액을 놓은 것이며,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에 중복 집계됐는지와 면제 계약의 실제 비중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입자가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회사와 맺은 금액입니다. 최근 7일 동안 다른 회사가 얼마를 조회했고 합산했는지는 별도 표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면제인지, 단순 누락인지 계약 뒤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면제액	300만원	현행 시행령
1인당 평균 잔액	1,737만원	2025년 6월말 등록 대부업자 조사
면제액 비율	17.3%	$300\text{만원} \div 1,737\text{만원}$
합산 기간	최근 7일	공포 전 예고안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최근 7일 합산은 아직 시행 중인 규칙이 아닙니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은 끝났지만 공포된 최종 조문과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 다른 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할 자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정보조회와 차입자 진술 중 어떤 자료를 언제 조회하고 보관할지 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03 · 미등록 사금융 부담은 합산식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대부업자는 등록한 자이므로 등록 밖의 채무를 파악하려면 별도 확인수단이 필요합니다.

04 ·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시점은 공포문을 봐야 합니다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의 갱신·증액에 새 산식을 언제 적용할지는 최종 부칙과 경과조치에서 확정됩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계약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업체명과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최근 7일간 여러 업체에 신청했다면 각 계약의 신청일·실행액·잔액과 제출한 서류를 한 표로 기록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공식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적용한 면제 기준, 산정 구성과 확인자료를 계약기록에 남깁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 짧은 기간에 나눈 계약, 다른 업체 대부액 조회 실패를 내부 점검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당국

- 최종 조문과 함께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할 자료·조회시점·보관기간을 정합니다.
- 시행 뒤 면제 계약 건수, 최근 7일 합산으로 증명서류를 받은 건수와 조회 실패율을 공개합니다.

갈림길**최근 7일 합산이 조회 가능한 규칙으로 공포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시행령 문언, 시행일과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할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확인자료와 함께 공포 업체마다 같은 자료와 시점으로 합산해 분할대부 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B 산정식만 공포 조회 방식이 회사별 절차나 차입자 진술에 남아 같은 부담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 시행령 제4조의3과 부칙, 금융위원회의 후속 보도자료에서 조회자료·시행일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불법채무 원스톱 지원의 결과](#) ↗

[넥서스 브리프 금리인상 취약차주 지원기준](#)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액을 합산하는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026.7.1, 과잉대부 금지 예외 항목,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2	1차 · 공고 제2026-419호의 법령안, 고정부업장 요건과 의견접수 2026.7.6~8.18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7.6,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3	1차 · 현행 면제액 100만원·300만원과 기존 잔액+새 계약액의 산정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 2026.5.6,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4	1차 ·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라는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2조·제3조, 시행 2026.1.2,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5	2차 · 2025년 6월말 등록 대부업자 8,203곳, 이용자 71.7만명, 잔액 12.5조원과 1인당 1,737만원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의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2025.12.31, 확인 2026.9.2 · 확인 2026-09-02 원문 열기 ↗
06	파생 · 일반 면제액 300만원은 1인당 평균 잔액 1,737만원의 17.3% $300\text{만원} \div 1,737\text{만원} \times 100 = 17.27\%$,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09-02

추적 예정	제4조의3의 합산 기간·대상, 다른 대부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하는 자료,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 합니다.
--------------	---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공개된 입법예고안과 현행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대출 체결이나 법적 대응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채무조정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